



제31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 공 선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위탁시설 개요

1) 민간위탁 사후 동의 4개소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시립해밀	사단법인 세계한인회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7	230	36	'24.6.1.~'29.5.31.
시립덕송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덕송3로 30단지 내	590	99	'24.5.1.~'29.4.30.
시립에일린의뜰	서○영	다산지금로 16번길 88-1	294	64	'24.6.1.~'29.5.31.
시립한강메이플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다산중앙로 153	244	65	'24.6.1.~'29.5.31.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민간위탁동의 누락건) 반영

2) 재계약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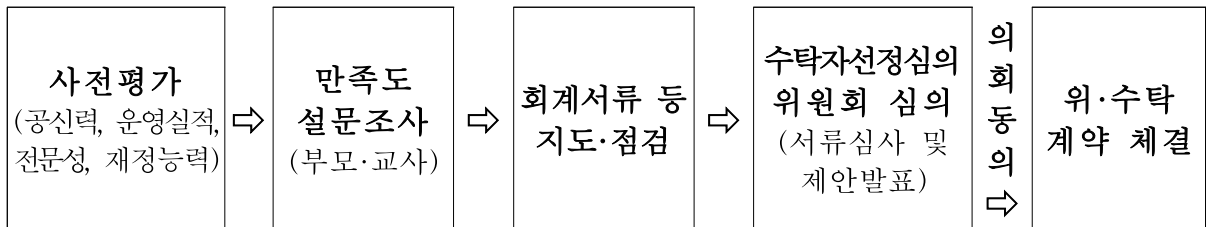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시립하임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	백봉로 32	299	69	'21.3.1.~'26.2.28.
시립묵현다사랑	박○숙	화도읍 먹갓로 27번길 19-17	217	36	'21.3.1.~'26.2.28.
시립아가사랑	라○진	퇴계원읍 도계원로 96 103-106	84	19	'21.3.3.~'26.3.2.
시립오남푸르지오	김○진	오남읍 진관오남로 759번길 70	148	29	'21.6.1.~'26.5.31.

3) 재위탁 2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시립효성솔빛길	화도읍 비룡로 33번길 25	220	41	'21.7.25.~'26.7.24.	'26.1차(예정) 수탁자심의위원회
시립덕송	덕송3로 30단지 내	590	99	<기존> '24.5.1.~'29.4.30. <변경> '24.5.1.~'26.4.30.	'26.1차(예정) 수탁자심의위원회 *계약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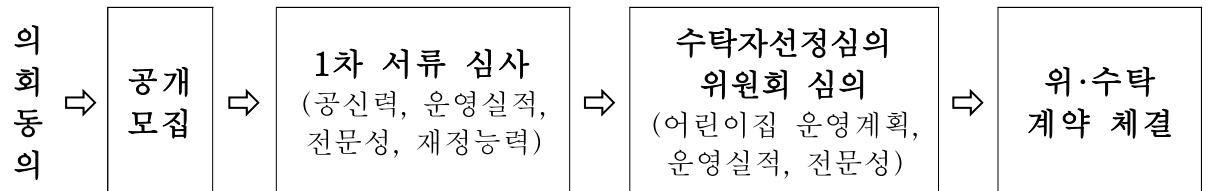
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재계약)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재위탁)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 최종결과 70점 이상, 1·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

라.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소요예산 : 3,134,260천원(2024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4,145,892천원(2025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2024년도】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3,134,260	2,016,149	1,118,111
1	시립해밀	36	10	514,078	399,428	114,650
2	시립덕송	99	19	1,156,746	642,331	514,415
3	시립에일린의뜰	64	11	662,937	407,226	255,711
4	시립한강메이플	65	16	800,499	567,164	233,335

【2025년도】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4,145,892	2,769,595	1,376,297
1	시립하임	69	19	913,401	631,197	282,204
2	시립묵현 다사랑	36	13	432,715	336,821	95,894
3	시립아가사랑	19	12	466,710	369,468	97,242
4	시립오남 푸르시오	29	10	551,621	381,657	169,964
5	시립호성 솔빛길	41	15	707,079	491,537	215,542
6	시립덕송	99	19	1,074,366	558,915	515,451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적 효율성	○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바.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

【2024년도】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50점)*	2차 평가(5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
1	시립해밀	적격	81.2	41	40.2
2	시립다산한강메이플	적격	90.6	46	44.6
3	시립덕송	적격	91.8	45	42.6
4	시립에일린의뜰	적격	88.4	45	43.4

* 2024년 기준 1차평가 50점, 최종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대상

【2025년도】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40점)	2차 평가(6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점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1	시립하임	적격	91.2	40	51.2
2	시립묵현다사랑	적격	81.4	35	46.4
3	시립아가사랑	적격	89.6	39	50.6
4	시립오남푸르지요	적격	96.8	41	55.8

사 향후계획

- 2026. 2. : (재계약 4개소)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2026. 3. : (재위탁2개소)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2026년 제1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

아. 기타사항

-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 [붙임1, 붙임1-1]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 [붙임2]
- 관련 법령 [붙임3]

4. 참고사항

- 가. 참고자료 : 붙임
- 나. 관련부서 : 보육과

5. 검토의견

□ 안전검토

- 본 안전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자 제출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중 4개소는 사후보고 성격
으로 제출되었으며, 4개소는 재계약, 2개소는 재위탁(공개모집)에 대
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간 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시립어린이집 95개소에 대하여 사후보고 형식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본 동의안은 이후 재계약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의회 동의를 누락되어 사후보고 성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행정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재계약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적적성 검토가 이행되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재위탁 대상 2개소 중 1개소(시립효성솔빛길)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1개소(시립덕송)는 지난 1월 8일 수탁자로부터 위탁운영 해지 신청서가 제출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1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2024년)

- 심 의 일 : 2024.2.16.(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 심의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어린이집명 (원장)	계 (100점)	사전평가(28점)							만족도조사 (10점)		현장 평가 (12점)	2차 평가 (50점)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13점)					운영체의 재정 능력 (5점)	부모 (7점)	보육 교직원 (3점)		
			경력 (5점)	평가제 참여 여부 (2점)	열린 어린이집 지정여부 (2점)	포상 (1점)	장애 통합 실시 (3점)					
시립해밀 (임은희)	81.2	8	5	0	2	0	3	3	7	1	12	40.2
시립다산한강메이플 (오유명)	90.6	10	5	2	2	0	3	3	7	2	12	44.6
시립덕송 (송진영)	87.6	10	5	2	2	0	1	3	7	3	12	42.6
시립에일린의뜰 (서지영)	88.4	8	5	2	2	1	1	4	7	3	12	43.4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 위탁 선정
 **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붙임1-2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2025년)

- 심 의 일 : 2025.11.27.(제5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025.12.22.(제6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7명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어린이집명				
			5차			6차	
			하임	목현다사랑	아가사랑	오남푸르지오	
계		100	91.2	81.4	89.6	96.8	
1 차 평 가	소계	40	40	35	39	41	
	1.운영체의 공신력	10	8	8	10	10	
	2. 운영체의 운영실적	회계관리의 적절성	5	5	5	5	5
		만족도조사 (부모·교사)	10	10	9	10	10
		취약보육운영	3	3	2	0	2
		열린어린이집	1	1	1	1	1
		시책사업 운영	가점	2	2	2	2
	3. 운영체의 전문성	업무경력	5	5	5	5	5
		포상 및 공모 사업 실적	1	1	0	1	1
	4.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3	5	5	
2 차 평 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1.운영체의 운영실적 2.어린이집 운영계획 3.운영체의 전문성	60	51.2	46.4	50.6	55.8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 위탁 선정

**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붙임 2-1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재위탁) 심사 기준

[1차 정량평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 계	3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10)	-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지적(시정명령·개선명령 등)사항이 1건 이상, 2건 이하인 경우 · 지적(시정명령·개선명령 등)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 (추가1건당 0.5점 감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은 10점 부여	10점 8점 7.5점
2. 운영체의 운영실적	5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2)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그 밖의연장형) 및 시간제보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 3개 이상 운영 · 2개 운영 · 1개 운영	2점 1점 0점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3)	- 관내 어린이집 근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2점 1점 0점
			- 최근 5년 이내 자원봉사 실적 · 50시간 이상 · 없음	1점 0점
		시책사업 운영 (가점)	-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 1년간 운영 · 2년 이상 운영	+1점 +2점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10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7)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 경력인정 :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7점 5점 3점 2점 1점
		원장의 전공 (2)	- 유아교육·(영)유아보육·아동학 전공자 ·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한 자	2점 1점
		최근 5년 이내 공모사업 수상실적 (1)	· 있음 · 없음 ※ 장관, 도지사, 시장, 한국보육진흥원장 수상실적 인정	1점 0점
4.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	<단체·개인> · 2억 이상 · 1억 이상 ~ 2억 미만 · 1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1천만원 미만 <법인> · 5억 이상 · 3억 이상 ~ 5억 미만 · 1억 이상 ~ 3억 미만 · 1억 미만	5점 4점 3점 2점

[2차 정성평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 계	7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보육사업 계획 (10)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참신성, 전문성,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 이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10)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운영계획의 구체적, 타당성, 이행가능성 여부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 이하
		예산의 적절성 (10)	·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세입항목) 보육료수입, 수익자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기타지원금 (세출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급간식비, 행사비, 수익자부담금지출, 전출금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 이하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의 적절성 (5)	·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 건강·영양·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절성	(우수) 5~4점 (보통) 3점 (미흡) 2점 이하
		지역사회 연계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5)	·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 ·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및 기회제공	(우수) 5~4점 (보통) 3점 (미흡) 2점 이하
2. 운영체의 운영실적	5	운영체의 운영실적 (5)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 사업으로 명시)은 5점 부여	(우수) 5~4점 (보통) 3점 (미흡) 2점 이하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25	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10)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전문자격증 보유, 연구논문, 표창)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장관, 도지사, 시장 표창 인정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 이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15)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우수) 15~13점 (보통) 12~10점 (미흡) 9점 이하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붙임2-2 시립어린이집 위탁체(재계약) 심사 기준

[1차 정량평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 계	4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 ·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이 우려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 *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 ※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부적격 처리(위탁 취소)	10점 8점 6점
2. 운영체의 운영실적	17	회계관리의 적절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내 재무회계 점검결과(수입·지출 원칙,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 준수) · 우수 · 보통 · 미흡 	4점 2점 0점
		어린이집 만족도조사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만족도조사(10항목×5점=50점) *소수점 이하 반올림 · 90% 이상 (45점 이상) · 80% ~ 89% (40점 ~ 44점) · 70% ~ 79% (35점 ~ 39점) · 70% 미만 (34점 이하) ※ 단, 회수율이 70%미만인 경우 	6점 5점 4점 3점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만족도조사(10항목×5점=50점) *소수점 이하 반올림 · 90% 이상 (45점 이상) · 80% ~ 89% (40점 ~ 44점) · 79% 이하 (39점 이하) ※ 단, 회수율이 70%미만인 경우 	3점 2점 1점 0점
		취약보육 실시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보육(장애아통합 포함),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기간 내 3년 이상 · 위탁기간 내 1년 이상 ~ 3년 미만 - 취약보육(장애아통합 미포함), 시간제보육 중 3개 이상 실시 - 취약보육(장애아통합 미포함), 시간제보육 중 2개 실시 - 취약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하 실시 	3점 2점 2점 1점 0점
		열린어린이집 지정 (1)	· 시립어린이집 변경 검토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1점
시책사업 운영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 1년간 운영 · 2년 이상 운영 	+1점 +2점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8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경력인정 :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7점 5점 4점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내에 보육 관련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 자 ※ 장관, 도지사, 시장 표창에 한하며, 공모사업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수상실적까지 인정 	1점
4.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단체·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 이상 · 1억 이상 ~ 2억 미만 · 1억 미만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 이상 · 3억 이상 ~ 5억 미만 · 3억 미만 	5점 4점 3점

[2차 정성평가]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 계	60			
1. 운영체의 운영실적	13	시설 운영 관리 (8)	·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 정도	(우수) 8-6점 (보통) 3-5점 (미흡) 2점이하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5)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2.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보육사업계획 (10)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참신성, 전문성,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이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5)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운영계획의 구체적, 타당성, 이행가능성 여부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예산의 적절성 (5)	·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세입항목) 보육료수입, 수익자부담금,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기타지원금 (세출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급간식비, 행사비, 수익자부담금지출, 전출금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의 적절성 (5)	·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 건강·영양·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절성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이하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22	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12)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전문자격증 보유, 연구논문, 표창)	(우수) 12-10점 (보통) 9-6점 (미흡) 5점이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10)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점이하

-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한다.

붙임 3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